

##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 변경 대비표

1. 대상 펀드 : 신영고배당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
2. 변경 대상 :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3. 변경 사유 :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집합투자규약	① 기타 운용비용 등의 보완 ②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사항 보완
일괄신고서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연환산표준편차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4→3등급) ③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사항 보완

4. 효력 발생(예정)일 : 2019년 5월 30일

5. 세부 변경 사항 :

◆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④<추가>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및 판결 원리금  ④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 해지 이후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익과 비용 등 금융투자업자가 추가 발생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해지 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는 투자신탁 해지 전 수익자에게 귀속되거나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⑨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 보고서, 자산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

		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칙	<신설>	<b>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 적용한다.</b>

◆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	제2부 4. 운용전문인력 <생략>	제2부 4. 운용전문인력 <u>운용현황 업데이트</u>
	제2부 5. 투자실적 추이 <생략>	5. 투자실적 추이 <u>업데이트</u>
	제2부 6. 주요투자위험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u>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4등급(보통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u> (연환산 표준편차 : 9.97)	제2부 6. 주요투자위험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u>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3등급(다소높은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u> (연환산 표준편차 : 10.07)
본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투자운용인력 <생략>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투자운용인력 <u>운용현황 업데이트</u>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u>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4등급(보통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u> (연환산 표준편차 : 9.97)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u>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3등급(다소높은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u> (연환산 표준편차 : 10.07)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u>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u>업데이트</u>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p>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p> <p>&lt;이하 생략&gt;</p>	<p>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u>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u>투자자가 해당 집합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u>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p> <p>&lt;이하 생략&gt;</p>
---	--